

이천시 고시 제2026-250호

이천시 도시관리계획(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, 어농온천 지구단위계획) 결정(실효) 고시

1. 이천시 고시 제2020-170호(2020.7.23.), 이천시 고시 제2021-77호(2021.3.25.)로 고시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(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, 어농온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실효되었으며 지정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었음을 같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(☎644-266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6. 06. 24.

이 천 시 장

가. 실효일자 : 2026. 06. 24.

나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.

다.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| 구분         | 도면 표시 번호 | 구역명                  | 구역의 세 분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| 면 적(㎡)  |           |     | 최 결정일   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 | 변경        | 변경후 |          |    |
| 실효<br>(폐지) | -        | 풍계지구<br>지구단위<br>계획구역 | 특정형       | 이천시 장호원읍<br>풍계리 44-1번지 일원 | 119,355 | 감)119,355 | -   | 20.7.23. |    |
| 실효<br>(폐지) | -        | 어농온천<br>지구단위<br>계획구역 | 관광<br>휴양형 |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<br>산55-1번지 일원 | 209,062 | 감)209,062 | -   | 21.3.25. |    |

나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| 구분         | 도면 표시 번호 | 구역명  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| 면 적(㎡)  |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효<br>(폐지) | -        | 풍계지구<br>지구단위<br>계획구역 |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<br>44-1번지 일원 | 119,355 |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[이천시 고시 제2020-170호(2020.7.23.)로부터 5년내 사업이 미착수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효력 상실] |
| 실효<br>(폐지) | -        | 어농온천<br>지구단위<br>계획구역 |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<br>산55-1번지 일원 | 209,062 |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[이천시 고시 제2021-77호(2021.3.25.)로부터 5년내 사업이 미착수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효력 상실]  |

※ 「국토계획법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실효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및 구역)에 대하여 지정 당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[경기도 고시 제2019-230호(2019.10.23.)]으로 환원

라.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도시관리계획 관련 도면은 경기도 고시 제2019-230호(2019.10.23.)로 결정된 지형도면(용도 지역)으로 환원되며, 세부사항은 해당 고시내용으로 같음함.